

청소년문화의집 관리규정

제정	2012.12.03	개정	2023.06.19
개정	2012.12.26	개정	2025.03.17
개정	2013.04.19		
개정	2013.08.13		
개정	2014.01.21		
개정	2014.12.10		
개정	2017.04.11		
개정	2018.03.01		
개정	2019.06.25		
개정	2023.03.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유스센터(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25.3.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관련 조례, 청소년관련 상위 법령 및 재단 제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운 영

제3조(기능) 유스센터의 기능은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5.3.17.>

1. 문화예술, 정보, 미디어, 과학 등 다양한 활동 요구에 따른 자율적 문화활동과 창조적 체험활동 기능
2. 일상의 여가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만남과 대화, 토론, 휴식과 오락을 통한 상호간 만남과 소통의 기능
3. 진로와 문화, 생활, 지역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서비스와 교류, 청소년 및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 기능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각 시설의 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7.4.11.>

1.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2.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3. 그 외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각 시설의 장은 유스센터의 주요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도 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2025.3.17.>

제6조(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① 각 시설의 장은 매년 초 당해 연도에 운영할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립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매 분기마다 필요시 조정여부를 검토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유스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1., 2025.3.17.>

1. 평 일 : 10:00 ~ 22:00까지
2. 토요일 : 10:00 ~ 20:00까지
3. 일요일 : 10:00 ~ 18:00까지
4. 매주 월요일과 신정, 설, 중추절을 제외하고는 개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유스센터 운영 발전 등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유스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9., 2018.3.1. 2019.6.25.>

③ 위원은 청소년대표·지역주민·관계공무원·시설종사자·청소년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8.13., 2017.4.11.>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이 규정 외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4.11.>

제13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상위 법령에 의거 각 시설의 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 4 장 시설관리

제14조(시설관리) ① 유스센터의 제반시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각 시설에 대하여 점검·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은 청소년수련관관리규정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3.4.19., 2025.3.17.>

② 각 시설은 자율적이고 특색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관 및 규정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규약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4.19.>

제15조(보험가입) ① 각 시설의 장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에 의한다. <개정 2017.4.11.>

제 5 장 이용료

제16조(이용료) ① 유스센터 이용자에게 대하여는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활성화 제고차원에서 실비보상 범위 내에서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3.17.>

② 이용료의 징수는 매년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하며, 임의로 감면 또는 증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8.13.> <개정 2017.4.11.>

③ 시장이 승인한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용자로부터 금액을 징수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료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3.8.13.>

제16조의2(이용료의 감면)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2017.4.11., 2023.3.15., 2023.6.19.>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소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마.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단, 지원연령을 이 법에 대한 해당 기준으로 적용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포함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반한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또는 가족

바. 65세 이상 노인

사.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가.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나. 시가 후원하는 청소년·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본조신설 2013.8.13.]

제16조의3(이용료의 반환) 제16조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4.11.>

[본조신설 2013.8.13.]

제17조(시설 이용의 거부) ① 시설 이용자 가운데 청소년과 무관한 시설 이용이나 프로그램의 건전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의 관리유지, 안전관리 및 선량한 이용자를 위하여 강제퇴거 및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에도 시정이 안 될 때에 한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용허가, 사용제한 및 취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며, 사용허가 범위는 강의실 및 다목적홀과 기타 부대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소년수련관관리규정 제13조5(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4.11.]

제6장 보칙

제18조 삭제 <2023.3.15.>

부칙(2012.1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6.)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이전에 발생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4.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1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6.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3.1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